

수신: 리카온화재해상자동차손해사정(주)
참조: 김종철 님 (010-9781-5879)
발신: 서용은, 유식 법률사무소
제목: 경북75바2917호 버스 사고에 대한 의견서

위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의견을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의문이 있으면 연락바랍니다.

다 음

1. 사실관계

가. 보험사항

보험종목: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

피보험자: (주)우주항공안동고속

나. 사고 경위

사고경위는 조합원사 (주)우주항공안동고속 소유의 경북75바 2917호 버스가 강우 중 내리막길을 주행하다가 우측으로 미끄러지면서 배전용 전주와 가로등을 충격 후 계속 진행해 M컨벤션웨딩의 건물을 충격해 건물의 외벽(유리창)을 파손한 사고인데, 피해물은 M컨벤션웨딩의 1층 외벽으로서 1층 내부는 식당으로 사용하고, 외벽은 강화유리 창호가 설치되어 있고 외벽 내부에는 식당과 외부를 구분하는 외벽과 별개의 유리창호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사고 당시 건물의 내부로 전기를 인입하던 배전선로가 손상되어 수리해 원상복구하기까지 3일간 전기작업이 진

행되었고, 외벽과 에어컨 등의 파손된 부분의 복구작업이 완료 되기까지 약 10여일 이상 소요되어 현재는 원상복구 완료된 상태임.

다. 질의사항

- 1) 상담 전화가 줄어들든 사실, 이후 예약(매출액)이 줄어들 것이 예상되는 사실 등을 당 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실(손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 2) 상기 1)의 사실(손해)이 특별한 사정에 의한 손해인지?
- 3) 당 사고 이외의 유사 사건에 대한 판례, 사례 등의 참고자료 요청

2. 검토 의견

가. 음식점 매출액이 감소될 것이 예상되는 사실 등이 이번 사고의 손해의 범위로 되는지 여부 :

피해자측 주장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고 당시에 M컨벤션웨딩의 건물에 차량이 충돌한 사고 사실이 지역 방송, 신문, 인터넷 등에 보도되었고, 그로인해 예약을 예약하거나 상담하기 위한 상담 전화가 거의 없었고, 웨딩홀의 영업은 상담 및 예약일로부터 1-2개월 후에 이루어지므로 현재 예약이나 상담 전화가 없으면 1-2개월 이후에는 예약(매출)이 전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당 사고로 인해 영업 손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비스공제조합이 영업손해에 대해서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가해자측의 주장은 사고 당시에 상담 또는 예약 전화가 없는 것이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8월-9월의 계절적인 이유로 혼례를 치르는
 고객이 없는 것일 뿐이며, 또한 사고 사실을 고객들이 알더라도
 1-2개월 이후로 예정된 예식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문의조차 하
 지 않는다고는 사회 통념상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적법한 손해의
 범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검토하건대 우선 건물의 훼손과 관련된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례
 를 보면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수리가 가능하면 그
 수리비가 '통상의 손해'로 된다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
 22048 판결,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8233 판결, 대법
 원 87. 11. 24. 선고 87다카1926 판결, 대법원 89. 6. 27. 선고
 87다카1966 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
 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
 산 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 상태의 차이를 말
 하는 것이고, 그것은 기존의 이익이 상실되는 적극적 손해의 형
 태와 장차 얻을 수 있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소극적 손해의 형
 태로 구분되지만 소극적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8971 판결, 대법원 94. 3. 22. 선고 92다
 52726 판결)

건물이 수선 가능한 정도로 손괴되어 건물의 통상용법에 따른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수선에 소요되는 상당한 기간 중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는 손괴로 인한 통상의 손해라 보

아야 하나, 이는 손괴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곧바로 수선에 착수할 수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공사가 진행중이고 진행과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손괴가 계속될 우려가 있어 곧바로 수선에 착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수선의 착수가 가능한 시점까지 사용을 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 역시 통상의 손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98. 6. 12. 선고 96다27469 판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보통 건축물의 훼손에 따른 적법한 손해의 범위는 건축물의 수리비에 한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기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 위의 손해가 특별한 사정에 의한 손해인지 :

사고가 발생한 음식점의 매출액 감소 (영업이익의 감소)라는 손해는 이른바 '특별손해'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가해자가 사고 당시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고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게 되는데 이번 사고의 전후 경위를 종합해보더라도 사고 당시 가해자측에서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다는데 대한 입증은 없는 것으로 보겠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해자측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물건 훼손시의 영업상 손실 (소극적 손실)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영업용 물건'에 대한 사고에 있어서는 '영업용 물건'의 수리기간 동안에 발생할 장래의 적극적인 수익 상실 손해는 휴업손해로서 통상의 손해로 인정하지만 (대법원 2004. 3. 18.선

고 2001다82507 판결, 대법원 90. 8. 14.선고 90다카7569 판결 등) 그밖에는 공장 기계의 가동중단으로 인하여 생긴 영업상 손실은 특별손해로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대법원 1996. 1. 26.선고 94다5472 판결) 또 건물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수리비로서 정신적 위자료도 회복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0. 1. 12.선고 88다카28518 판결, 대법원 1980. 12. 9.선고 80다1840 판결)

다. 당 사고 이외의 유사 사건에 대한 판례 :

1) 대법원 2004. 3. 18.선고 2001다82507 판결 :

이 판례는 영업용 물건 “자체”가 손괴된 경우에는 그 수리에 필요한 기간 동안의 손해는 휴업손해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지만 ‘영업상 손실’의 경우에는 특별손해에 해당하는 것이 되는 것과 다르다는 취지

2) 대법원 1996. 1. 26.선고 94다5472 판결 :

화물트럭이 공장지대에 위치한 전신주를 충격하여 전선이 절단된 경우, 전력공급 중단으로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어 영업상 손실을 입게 될지는 특별손해로서 인정할 수 없지만 기계 고장 또는 작업중의 재료 손상 등은 적극적인 손해로서 인정된다는 점에서 영업상 손실과 구분된다는 취지

2015. 8. 13.

변호사 서 용 은

변호사 유 식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
기)

[1]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교환가치 상당액 이외에 휴업손해도 배상할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불법행위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위자료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휴업손해는 그에 대한 증거가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로서 그 교환가치와는 별도로 배상하여야 하고, 이는 영업용 물건이 일부 손괴된 경우,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 [2]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51조, 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다1840 판결(공1981, 13459)(변경), 대법원 1990. 8. 28. 선고 88다카30085 판결(공1990, 2011)(변경),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다카20210 판결(공1990, 2272)(변경),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29325 판결(변경) / [2] 대법원 1989. 8. 8. 선고 88다카27249 판결(공1989, 1354),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334 판

법률자문서 -유식.서용은변호사사무소

628 판례공보 2004. 4. 15.

결(공1992, 2003),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59779 판결(공1995상, 472),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31574 판결(공1997상, 58)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망 홍실광의 소송수계인 심옥희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순례)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태훈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청 담당변호사 장용국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11. 20. 선고 2001나36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일실 휴업손해에 관한 부분 및 위자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홍실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 소유의 피해 선박이 침몰로 멸실되자 대체 선박을 마련한 후 1999. 11. 9.부터 어업을 재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고일인 같은 해 7. 11.부터 조업체개일인 같은 해 11. 9.까지 약 4개월간 홍광실이 입은 영업수익 상실손해인 금 76,273,648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 선박이 침몰하여 멸실된 경우 선박소유자가 입은 손해액은 그 멸실된 선박의 교환가격에 그치고 그 이외에 선박을 이용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 상당은 그 교환가격의 이차 상당액에 포함된다 할 것이어서 교환가격의 배상을 구하는 외에 선박을 이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별도의 손해로 청구할 수는 없다는 제1심의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들의 위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다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휴업손해는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로서 그 교환가치와는 별도로 배상하여야 하고, 이는 영업용 물건이 일부 손괴된 경우,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불법행위로 영업용 선박, 자동차, 건물 등의 물건이 멸실된 경우에 그 물건의 교환가격 상당액의 배상 이외에 그 물건을 대체할 다른 물건의 제조 또는 구입시까지의 기간 동안 그 멸실된 물건을 사용·수익하지 못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29325 판결,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다카20210 판결, 대법원 1990. 8. 28. 선고 88다카30085 판결,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다1840 판결을 비롯하여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판결들은 그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법률자문서 -유식. 서용은변호사사무소

2004. 4. 15. 판례공보 629

따라서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대체 선박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및 그 기간 동안의 조업수입액 등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원고들의 위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다.

나. 원심판결 중 위자료 청구를 일부 기각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 내에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위 홍실팡이 이 사건 선박충돌 사고로 생활기반이 되는 어선이 완전파손됨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였으며 대체선박을 구입하여 다시 생업에 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 사망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홍실팡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자료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그 액수는 금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3157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선박충돌 사고로 위 홍실팡이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위 홍실팡에게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고,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할 것인데, 원심이 이러한 점에 관하여 제대로 심리·판단을 하지 않은 채 만연히 앞서 실시한 이유만으로 피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는 재산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의 인정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일실 휴업손해에 관한 부분 및 위자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장 최종영(재판장)

대법관 조무제 변재승 유지담 윤재식 이용우 배기원

김신욱(주심) 이규홍 이강국 박재운 고현철 김응담

법률자문서 -유식.서용은변호사사무소

1996. 3. 15. 판례구보 713

1996. 1. 26. 선고 94다5472 판결 (손해배상(자))

원판

[1] 불법행위의 직접적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간접적 손해가 특별손해인지 여부

[2] 공장지대에 위치한 전신주물 충격하여 인근 공장에 전력공급이 중단됨으로써 피해자가 영업상 소극적 손해 및 기계 고장 등 적극적 손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의 배상책임의 범위

【판결요지】

[1] 불법행위의 직접적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간접적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다.

[2] 가해자가 공장지대에 위치한 전신주물 충격하여 전선이 절단된 경우, 그 전선을 통하여 전기를 공급받아 공장을 가동하던 피해자가 전력공급의 중단으로 공장의 가동이 상당한 기간 중지되어 영업상의 손실을 입게 될지는 불확실하며 또 이러한 손실은 가해행위와 너무 먼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전주 충격사고 당시 가해자가 이와 같은 소극적인 영업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지만, 이 경우 그 전신주물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고 있는 인근 피해자의 공장에서 예고 없는 불시의 전력공급의 중단으로 인하여 갑자기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는 바함에 당시 공장 내 가동 중이던 기계에 고장이 발생한다든지, 작업 중인 자료가 못쓰게 되는 것과 같은 등의 적극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정은 가해자가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제2항, 제763조 / [2] 민법 제393조 제2항, 제763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5369 판결(공1991, 2714),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29972 판결(공1992, 1698),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11344 판결(공1996상, 358)

【원고, 상고인】 안경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신일)

【피고, 피상고인】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

【원심판결】 부산지법 1993. 12. 16. 선고 93나123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적극적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소유의 판시 화물트럭의 운전사이던 소외 정연종은 1991. 8. 16. 0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북구 감전1동 소재 원고 경영의 열경화수지원료(주방기구용 플라스틱) 생산업체인 동아화학공업사 앞 도로 상에서 일시정지를 하다

법률자문서 -유식, 서용은변호사사무소

714 판례공보 1996. 3. 15.

가 위 도로 우측 변에 서 있던 소의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전신주를 들이받게 되었고, 그 바람에 위 전신주의 일부분이 절손됨과 동시에 위 전신주를 통하여 공급되던 전기의 공급이 위 한국전력공사에 의하여 수리가 완료된 같은 날 15:40경까지 중단되게 된 사실, 한편 원고가 경영하는 위 동아화학공업사는 위 전신주를 통하여 전기를 공급받아 제품생산 등의 작업을 하여 왔는데 앞서와 같이 전기 공급이 중단되는 바람에 그 시간 동안 작업을 하지 못하여 원재제가 굳어져 폐기하는 등의 손해를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사고로 인하여 원재료 손실, 영업 손실, 복구작업에 따른 인건비 손해, 전력모터 수리비 및 폐기를 처리비용 등의 손해에 대하여 위 차량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그 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위 사고로 인하여 설명 그 주장과 같은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 트럭의 운전사인 소의 정연중의 불법행위는 소의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전신주를 들이받아 이를 손괴한 것으로 그 직접 상대방은 위 한국전력공사일 뿐 원고는 그 직접적 상대방이 아님이 분명한데, 이와 같은 경우에 위 소외인의 행위가 직접적 상대방이 아닌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위 소외인이 그의 행위로 원고 경영의 위 동아화학공업사의 정전사태가 야기되어 그 때문에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피해를 입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할 것인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 장소가 공장지대 부근이라는 점은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소외인이 사고 당시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과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있다.

불법행위의 직접적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간접적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소외인이 공장지대에 위치한 전신주를 충격하여 전선이 절단됨으로써 그 전선을 통하여 전기를 공급받아 공장을 가동하던 원고가 전력공급의 중단으로 공장의 가동이 상당한 기간 중지되어 영업상의 손실을 입게 될지는 불확실하며 또 이러한 손실은 가해 행위와 너무 먼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전주 충격사고 당시 소외인이 이와 같은 소극적인 영업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지만, 공장지대에 위치한 위 전주 충격사고로 전선이 절단되는 경우 위 전신주를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고 있는 인근 원고의 공장에서 예고 없는 불시의 전력공급의 중단으로 인하여 갑자기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는 바람에 당시 공장 내 가동 중이던 기계에 고장이 발생한다든지, 작업 중인 자료가 못쓰게 되는 것과 같은 등의 적극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정은 소외인이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위와 같은 적극적 손해를 입을 것이라는 것조차 소외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그 부분 손해배상 청구까지 모두 배척한 것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논지는 그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적극적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판여 법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법률자문서 -유식. 서용은변호사사무소